



1972년도 제18차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 1972년 2월 28일 오후 2시

장소 : 교육회관 대강당

안건 : 1. 개회식

2. 제4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3. 1971년도 사업실적보고
4. 1971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
5. 1972년도 사업계획 보고
6. 1972년도 예산안 보고
7. 경관개정안 심의
8. 기타

1. 개회식

사회(사무국장) : 한국도서관협회 제18차 정기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의례

국민교육현장 낭독 : 이상규 전무이사(창원세 이사 대독)

개회사 : 강주진 회장(별지 참조)

격려사 : 민관식 문교부장관(최천근 사회교육국장 대독)(별지 참조)

2. 제4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제4회 한국도서관상 및 감사장을 강주진 회장이 시상하다(별지 참조)

성원보고 : 단체회원 525명, 개인회원 400명, 총 925명 중 단체회원 213명 개인회

원 121명 위임 95명 총 429명 참석으로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성원됨을 최
근만 사무국장이 보고하다.

의장(회장) 전희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대권(총무부장) 제17차 총회 회의록을 낭독하다.

—이의없이 통과되다—

제18차
한국도서관협회 정기총회 회의록

3. 1971년도 사업실적보고

의장(회장) 1971년도 사업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권(총무부장) 배부된 1971년도 사업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히 보고하다.

1971년도에는 총 44회의 제회의와 보조사업 중 독서주간행사(제17회)완료, “한국도서관통계” 1,000부 발행완료, 선정사업으로 71년도 1년중에 간행된 도서중 양서 999종을 선정하여 매월 월보에 게재하고, 1969~1970년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도서중 양서 총 1,738종을 선정하여 「선정도서목록 IV」을 1,000부 발행완료, 총서 및 번역서 간행사업으로 5책 각 1,000부를 발간완료, 기관지 “도협월보” 12책 “총 24,000부” 발간완료, 서지사업으로 “한국참고도서해제”발간 완료와 “한국서지년표”的 원고 탈고, 도서판 및 마을문고 지도자 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제10회 전국도서관대회를 중앙대학교에서 4개관 총을 종합하여 실시하였고 배부사업은 총 93종 29,348책을 수집 배부 완료, 지구협의회 및 부회육성사업, 표창사업 등을 완료하고 특수사업으로는 한국도서관 실태조사보고서를 상하 2책 각 700부 발간 완료하고 장학금 적립사업을 추진하여 9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국제간 도서판 관계 문현교환을 비롯하여 국제교류활동사업이 활발하여 국제간에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회장) 지금 보고를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지난 해에는 어려운 재정형편 아래에서도 우리가 의도한 사업이 모두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고드린데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치숙(경상북도 학생도서관) 사업보고는 결산보고와 연관이 되는 사항이니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찬성하다——

의장(회장)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4. 1971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

의장(회장) 1971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권(총무부장)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결산보고를 자세히 하다.

권재식(감사) 배부된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자세히 보고하다.

의장(회장)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에 지난 해에는 사회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감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작년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대과없이 성취한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김종문(부산시립도서관) 71년도 국고보조금중 잔액(반납금)과 자체사업비 세출중 잔액은 잔금이 있어도 쓰지 않고 남겨 둔 것 같이 보이는데 감사보고서에는 미수금 문제로 재정이 곤란했다고 하니 설명을 해주시십시오.

권재식(감사) 국고에서 남은 것은 국고에 반납을 하였고, 자체사업에서의 잔액은 문교부에 제출하는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수금입니다.

윤학구(국립중앙도서관) 그러면 미수금은 신년도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권재식(감사) 미수금은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홍(군산여상) 앞으로는 미수금을 남겨두지 않고 연내에 받아들이거나 결손액으로 삭제해 버리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회장) 그 문제는 앞으로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지만. 현재로는 문교부의 통일된 양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업실적,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를 인준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건 5. 197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의장(회장) 이번 안건은 사업계획 보고인데 예산과 연관되는 것이니 함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권(총무부장)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상세히 보고하다.

<보조사업>

- ① 독서주간행사 ② 도서관주간행사 ③ 전국도서관대회 ④ 도서관학 총서 발간 사업 ⑤ 도서선정사업 ⑥ 서지년표발간사업 ⑦ 도서판통계 발간사업 ⑧ 도협월보 발행사업 ⑨ 도서관 실무편람 영인 ⑩ 배부 함자료보급사업 ⑪ 국제교류활동사업

<자체사업>

- ① 지도육성사업 ② 표창사업 ③ 조사연구사업 ④ 자료실 운영사업 ⑤ 자료배부사업 ⑥ 적립사업 ⑦ 기타사업

아울러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고하다.

의장(회장) 지금 보고한 내용에 의문이 나시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문(부산시립도서관) 자체사업 예산중 직원의 급

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직원수가 나와있지 않고 지난해의 미수금 관계가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최근만(사무국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직원이 3명이 줄었고 또한 급여도 작년보다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나 따로 미수금 항목만을 설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규범(부산교육대학) 미수금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만(사무국장) 미수금에는 사업을 수행해서 수입될 예정이던 것이 들어오지 않은 것과 회비미수금이 있습니다. 회비는 금년에 모두 수금이 될 전망이 있고 또 출판물 대금도 전액이 미수금은 아닙니다. 실무관련을 영인할 계획으로 세운 작년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전혀 수입을 보지 못했고 다른 미수금은 금년도에 들어올 것입니다.

의장(회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건 7. 정관 개정안 심의

의장(회장)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총회에서 개정할 것을 결의해 주셔서, 그동안 행정분과위원회, 문과위원회회의, 상무이사회 이사회 등에서 여러 차례 검토 수정한 최종안입니다.

박대권(총무부장)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수정안에 대한 조문별로 제안 설명을 하다.

의장(회장) 지금 수정된 부분의 낭독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은 문제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4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범(부산교육대학 도서관) 제9조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줄인 것은 이사의 수가 너무 많아서 줄인 것인지 의문이 가며, 제11조에 임원의 선출에서 회원이 아닌 사람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만(사무국장) 본래 이사의 수를 줄이자는 의견은 관계의 종합된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수 또는 관종별 등을 고려 할 때 어느 정도선이 가장 적절한 구성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한 끝에 13명의 수가 나온 것이고, 도협의 임원으로 선출되는 분은 회원이어야 하고 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할 리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정필모(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임원의 선출방법에는 “단”조항이 필요 할것 같습니다. 즉 회원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직책을 맡은 것 얼마안되어 실무에 어두운 도서관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어 참여하면 비

능률적이므로 “임원은 개인회원 중에서 도서관계에 3년이상 봉직한 자라야 한다”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 이 좋겠습니다.

의장(회장) 그것은 임원의 자격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 되니까 협회 사람다면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선출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정순홍(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제11조 1항에 비밀투표로 뜯박아 놓으면 범위가 너무 축소되는 느낌이 듭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삭제하면 당시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항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복(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개정안을 기초한 사람으로서 비밀투표란 문구를 삽입한 것은 서로의 체면이나 이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종 결정을 비밀투표에 의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정희(경기고등학교) 비밀투표란 선출과정과는 별개인 최종적 선출방법인 것입니다. 비밀투표라고 명시해 둔다해서 그 선출과정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필요할 때 비밀투표를 사용하는 폐단이 있을 때에는 이를 뜯박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회장) 임원을 선출할 때는 자연히 비밀투표가 될 것이니 이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동 그대로 두는 것에 찬성하다——

의장(회장) 그리고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 단서를 추가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 단서를 붙이지 않는게 찬성하다——

의장(회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의미에서 박수로 찬성해 주십시오.

——일동 박수——

의장(회장) 그러면 경관개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안건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8. 기타 안건

현규석(국립중앙도서관) 금년은 세계도서의 해이므로 금년을 도서관계 발전에 전환점을 가져오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도서의 해에 대한 도서관인의 자세를 설명하게 의부에 표현할 필요가 있

(12면 左段에 계속)

★ 감사장 수상자

金 判 永

1923年 6月 17日生

근무처 : 전경북교육위원회 교육감



(수상하고 있는 김판영 씨 (左))

功績事項

1) 1964年부터 1972年 2月 4일까지 8개년間 慶北敎育行政의 責任者로 있으면서 敎育의 기반을 조성하는 길은 學校圖書館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信念으로 道內 모든 初中高等學校에 도서관(실) 또는 讀書코너를 設置하게 하여 학교도서관의 發展을 적극 도

(6面에서 계속)

습니다. 그래서 종회명의로 외부에 우리의 자세를 표명하는 선언서를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전문위원회에서 문안 작성하여 선언하기
로 찬성 결정함——

장일세(국립중앙도서관) 우리가 매년 당국에 전의문을 제출하여 되는 일도 있고 안되는 일도 많았지만, 올해는 세계도서의 해인 만큼 우리의 전의내용이 모두 반영되도록 당국에 적극적으로 전의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회장) 이 의견도 전문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범(부산교육대학 도서관) 금년에는 독서주간, 도서관주간 행사를 통하여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에게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인식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스콤이나 유명인사를 동원하여 국민에게 강한독서열을 가지도록 자극시켜주고 적극적인 행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희(국방과학연구소) 금년도 전의사항에 대학도서관의 관장은 전문적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포함시키고, 국회와 국립에서 중복되는 사항을 양립시키지 말고 좀 더 국가의 대표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의문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찬성하다——

의장(회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72년도 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하였음.

2) 圖書擴充計劃(1~2次 4個年計劃)을樹立하여 道內 全國民學校가 보유한 책이 1964年에 195,000卷인 것을 1971年末現在 1,224,255卷으로學生 1人當 1.5冊으로 增加시켰고 中高等學校는 1964年에 147,300卷에서 1971年末現在 1,295,115卷으로學生 1人當 5冊으로 增加시키는 實績을 거두었음.

3) 어려운 道敎育財政에서 7,031,557원을 할애하여 總建坪 400坪의 學生圖書館을 設立하여 學生들의 學習 환경을 조성시키고 학교도서관의 센터 역할을 담당시켜 도서관 발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도모하여 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하였음.

河 景 根

1932年 4月 1日生

근무처 : 중앙대 학교도서관장

功績事項

1) 1968年 8月에 同校 圖書館長에 被任되어 지금까지 館界發展에 畫力해 왔으며 지난 1971年度 第10回 全國圖書館大會를 同大學校에서 盛大히 開催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데 至大한 貢獻을 하였음.

(14면에서 계속)

寄附한다.

第33條 本定款은 總會의 議決이 아니면 變更할 수 없다.

第34條 本定款의 施行上 必要한 規定 및 細則은 別途로 理事會에서 定할 수 있다.

附 則

本定款은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로 施行한다.

附 則

(1) (施行) 本定款은 1956年 4月 20일부터 施行한다.

(2) (改正) 本定款은 1961年 4月 23일부터 改正 施行한다.

(3) (改正) 本定款은 1962年 1月 28일부터 改正 施行한다.

(4) (改正) 本定款은 1963年 1月 20일부터 改正 施行한다.

(5) (改正) 本定款은 1965年 2月 13일부터 改正 施行한다.

(6) (改正) 本定款은 1968年 5月 28일부터 改正 施行한다.

(7) (改正) 本定款은 1973年 2月 1일부터 改正 施行한다.

* 고딕으로 인쇄된 부분이 개정된 부분임.